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1 — 142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문화관광과)	1
2021 - 14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9
2021 - 144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17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4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재)거창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의 기획·운영 등의 사업의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
- 거창군 문화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
-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대여 사용하여 왔음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김천리 216-5번지)

O 부 지: 15,578 m²

- 거창문화센터 사용면적 : 6,564 m²

○ 연 면 적 : 4,363.27 m²

○ 건축면적 : 2,447.10 m²

○ 소 유 자 : 거창군

O 사 업 비 : 13,160백만원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허가대상: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거창군수)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사용료 감면(면제) : 267,102,153원

○ 부 지 : 3,166,473,600원 / 공시지가(482,400원) × 면적(6,564㎡)

O 건 물: 2,175,568,706원(시가표준액)

○ 사용료 산출 : 5,342,042,306원×50/1,000 = 267,102,153원

* 산출내역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50/1,000(요율)

O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다. 추진경과

- 2017. 1. ~ 2021. 12. 31. 부동산 무상임대
- 2021.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라.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문화재단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수익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마. 기대효과

○ 거창문화재단에서 거창문화센터를 무상사용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O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 O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위치도 및 연왕사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위치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현장사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 1. 허가의 목적 ·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 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 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 려는 경우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8. 4.]

-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 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 4., 2020. 12. 22.>
 -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2652호

-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사용 목적 및 기간
 -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 3.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 4.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 5. 허가조건
 - ③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염 러가 있는 경우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8호

- 제 4조 (관리 및 운영) ① <u>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u>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2014.7.30)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4.7.30)
 - ③ <u>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u>다.(2014.7.30)
 - ④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7.30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 2조 (위탁관리 신청)「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거창군 문화센터 (이하"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11.23 조례 제2339호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8	_
-----	---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1 - 143

제출자 거창군수

① 가조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 사업

1. 제안이유

- 당해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수월공원)으로 결정된 수월리 495-5번지 인접 필지로서,
- 가조 도심지의 점진적 확대, 항노화힐링랜드 개장 등 더 커진 가조권역의 실정에 맞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 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O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95 등 3필지

○ 토지면적 : 1,545 m²(편입면적)

○ 소 유 자 : 김○규 등 2명

○ 취득금액: 463,500천원(m³당 300천원 / 가감정)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쟂삽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취득사유	비고	
十正	종별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천원)	시기	ਸ਼ਤਮਸ	01.77
계				1,545	1,545	137,225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	과	704	704	56,390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김○규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6	과	660	660	62,898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최○준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10	과	181	181	17,937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최○준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20. 5. : 수월공원 결정 부지(495-5) 매입 완료

라. 향후계획

○ 2022. 1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O 2022. 1월 ~ 3월 : 토지보상 협의

마. 기대효과

- 가조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시설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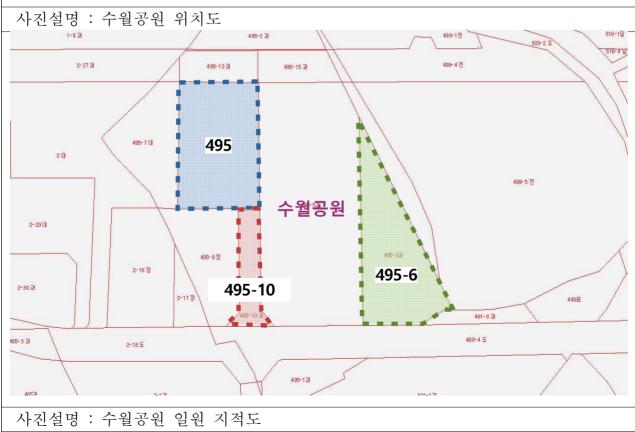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위치도 및 연왕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수월리 495



수월리 495-6



수월리 495-10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 1. 사업목적 및 용도
- 2. 사업기간
- 3. 소요예산
-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 처분하는 경우
-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44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기간(2021.1.1.~2022.12.31.) 중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주)NH유통의 해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O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10명

O 근무조건: 근로기준법 준수

O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O 월 급여: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자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

라.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위탁 변경사유

- O 2021. 12. 31. 현재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NH유통 해산 예정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재위탁 제한)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O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체 또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다. 관계법령

- O「다문화가족지원법」제16조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라. 향후계획

○ 2021. 12.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O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2022. 2. 1. ~ 2023. 12. 31)

마. 예산조치 : 위탁운영비 연간 30,000천원

바. 위탁 운영계획 : 따로 붙임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 계획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NH유통의 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2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 위탁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1인당 월 근로임금 50%이내(50만원 이하)

위탁금으로 보조

- O 위 탁 금: 30,000천원 / 군비
- O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 표	위 치	위탁기간	업 종	변동사항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김학두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2021. 1. 1. ~ 2022. 12. 31. (2년)	농산물 유 통	2021.12.31. 법인 해산

- ※ 최초위탁 : 2011. 3. 2.
 - O 위탁 변경사유
 - 2021. 12. 31. 현재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NH유통 해산 예정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재위탁 제한)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1. 9. 24. 거창한거창 조합공동사업법인 법인 등기
 - : 2021. 12월 중 ㈜NH유통과 업무승계 내용 확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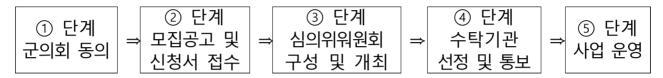
○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O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고용문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과선별 작업	9명	9명	9명	14명	9명	

O 위탁방법 : 공개모집

O 위탁 추진절차



3 추진계획

- O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1월
- O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10.(15일간)
 - 접수기간 : 2022. 1. 4. ~ 1. 10.(7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신청자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을 가입

하는 관내 소재 업체 또는 법인(단체)

- O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월 중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O 위탁계약 체결 : 2022. 1월 중
 -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4 향후 추진일정

○ 2021. 12.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붙임 관련 법규 1부. 끝.

붙임1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오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